

수원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0나23727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2. 11 선고 2020나2372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합1455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진

피고, 피항소인 1. D

2.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변론 종결 2021. 12. 24.

판결 선고 2022. 2.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0. 8. 선고 2019가합1455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억 5,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2. 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억 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억 원, 원고 C에게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2. 2.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억 5,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억 원, 원고 주식회사 B에 1억 원, 원고 C에게 5,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인데,

M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F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O 및 P(이하 '매도용역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는 매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각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매도용역인들 중 1인인 P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나, 이 사건 토지와 현황도로인 Q 사이에 있는 R 구거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와 Q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 부근 S리 마을 배수로를 이 사건 토지와 연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T측량토목설계사무소의 검토 결과를 확인한 후, 2019. 4. 2.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9억 1,67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9억 1,670만원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4억 1,670만 원은 2019. 11. 19.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피고들 또는 원고들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특약사항

1. 현 상태(지상물 포함)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원고들은 계약금 5억 원 중 가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9. 4. 2.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2019. 5. 13.까지 지급하며 이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신청 및 분할, 인허가(근생)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피고들은 지급된 계약금 일체를 원고들에게 반환한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과 동시에 분할, 인허가(근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체 제공 및

적극 협조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9. 4. 2.부터 2019. 5. 15.까지 계약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A	피고 D	2019. 4. 2.	5,000만 원
피고 E	2019. 5. 13.	1억 원	
원고 B	피고 D	2019. 5. 14.	1억 원
피고 E	2019. 5. 15.	5,000만 원	
원고 C	피고 D	2019. 5. 13.	5,000만 원
피고 E	2019. 5. 14.	5,000만 원	
합계	2019. 5. 14.	5,000만 원	
	5억 원		

라. 원고들은 2019. 5.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중출장소(이하 '안중출장소'라고 한다)에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2019. 5. 30. 안중출장소로부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내지 제46조에 따라 통과도로까지 막다른 진입도로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4m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와 연결하려는 Q의 너비가 3m에 불과하여 추가로 1m 이상 도로 너비를 확장하여야만 근린생활시설 건축의 인·허가 요건을 갖추 수 있는데, 이렇게 도로 너비 확장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매수비용 9억 원이 요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 제4항 단서로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신청 및 분할, 인·허가(근린생활시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며, 피고들은 지급된 계약금 일체를 원고들에게 반환한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2) 제1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약을 '인·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의미로 인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들이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는데, 이렇듯 이 사건 특약의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약은 의사불합치로 인하여 무효이고, 법률행위 중 일부 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부 무효이다.

3) 제2 예비적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착오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은 매도용역인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바, 이에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특약은 피고들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인·허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일 뿐, 원고들의

인·허가 취득 여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정하는 약정이 아니다.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들에게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피고들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인·허가 신청을 완료한 이상,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신청의 성립'이 완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특약의 해석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5, 16, 18, 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와 당심 증인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의 '신청의 성립'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관련 인·허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약은 '원고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신청의 사전적 의미는 '공법(公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인바, '건축 인·허가 신청행위' 자체는 신청 요건의 구비 여부,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어떠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인·허가 신청은 관할관청에

건축 인·허가를 요구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곧바로 '건축 인·허가'를 받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에 따른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 인·허가 신청은 신청인에게 어떠한 유의미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축 인·허가 신청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지 '건축 인·허가 신청이 성립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약의 '인·허가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시'라는 문구는 인·허가 신청 행위 측면에서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인·허가 신청의 목적 측면에서 '인·허가 신청에 따른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해석될 수도 있어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매도용역인들 중 1인인 P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이긴 하나,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R 구거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 부근 S리 마을 배수로를 이 사건 토지와 연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T측량토목설계사무소의 검토 결과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오전 피고들에게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조항으로 명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의 거부로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가 약 4시간 후 다시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특약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되었다.

③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사건 특약의 의미가 '인·허가 신청에 따른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즉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9. 5. 중순경 매도용역인 F의 요구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배수로 부지(U) 소유자와 S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비용으로 각 30,000,000원씩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안중출장소로부터 도로 확보의 보완요구를 받은 직후인 2019. 6. 3. 매도용역인들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E는 원고들에게 2019. 9. 16. '신규 매수자랑 계약을 할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하다. 이번 달 안에 확실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9. 10. 16.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건 거둬들인다고 했습니다. 당초 계약금 받은 것은 조만간 돌려주려고 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2019. 9. 17.자 내용증명우편을 받고, 2019. 9.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들은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여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협의결과내역에 확인되듯이 인허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것인바,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의 의미를 '인·허가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받은 매도용역인들도 이 사건 특약의 의미가 '인·허가 신청에 따른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주식회사 N의 P, V, O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다'라고 확인하였으며(갑 제15호증), 당시 증인 P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계약금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49억 원의 가치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또다른 매도용역인인 M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F는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원고들이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피고 측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 문구를 작성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 W는

'평택시에서 불허할 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에서 성립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 '근생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쌍방 합의한 후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해주었다', '2019. 4. 2.경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는지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고, 오후에 계약서 날인할 때, 진술인이 받은 전체적인 인상이나 그날 구두로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쪽이었습니다.'라고 확인하였는데(갑 제10, 16, 20호증), 제1심 증인 F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W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 협의된 내용을 작성해온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⑥ 피고들은, 이 사건 특약의 의미가 피고들이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인·허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조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과 분할, 인·허가(근린생활시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일체 제공 및 적극 협조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들의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의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원고들에게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부할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의미로 이 사건 특약을 굳이 포함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오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매매계약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가 당일 오후에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은 당초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원고들이 인·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한다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더라도 원고들이 임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되어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러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좌우되게 되는데, 이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원고들의 인·허가 신청의사에 따르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자체만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되는 Q의 도로 너비를 확장하여야만 그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데, Q 확장을 위한 비용 9억 원은 매매대금 49억 1,670만 원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비용 지출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9억 원의 비용을 들여 Q의 너비를 확장하여야만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매매대금을 대폭 감액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즉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인허가(근생)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D는 원고 A에 1억 5,000만 원, 원고 B에 1억 원, 피고 E는 원고 A에 1억 원, 원고 B에 1억 원, 원고 C에게 5,000만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된 다음날인 2019. 10. 1.2)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심연수

판사유현종

판사김무신

재판장판사

별지

1)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어학사전 참조

2)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2019. 9. 17.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갑 제21호증)을 발송하였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된 날을 확인할 증거는 없으나, 피고들은 2019. 9. 30. 원고들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신(갑 제22호증)을 발송하였으므로 늦어도 피고들이 위 답신을 발송한 2019. 9. 30. 무렵 원고들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